[붙임 4]

가산점 적용 전형 안내

구분	인정기준	가산점수	서류전형	면접전형
취업지원대상자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	만점의 5~10%	○	○
장애인 (중증장애인)	「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3조에 해당하는 자	만점의 5% (10%)	○	○
외국어성적	붙임 5 참조		○	○

※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1조 제3항에 따라 직렬(분야)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아니함.